

의안번호	2204854
의 퇴 인	이만희의원
회 답 일	2024. 11. 25.
추 계 번호	24B4481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(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)	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(제1항) 4.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,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하여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※ 국유임산물의 무상 양여에 따라 수입감소 발생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(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)	• 제3호 － (수입감소)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—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 무상공급(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)

□ 현행법¹⁾은 산림청장이 재해예방 및 복구자재, 용재(用材) 가치가 없는 땔

1) 법 제29조(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)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

1.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

2. 재해를 입은 자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임산연료(林産燃料)의 공급

3. 용재(用材)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업인 등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의 방법,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감 등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(임산물(林産物)) 목재, 수목, 낙엽,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(産物), 그 밖의 조경수(造景樹), 분재수(盆栽樹) 등²⁾
- (국유임산물)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³⁾
- (무상양여 요건)
 -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
 - 재해를 입은 자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임산연료(林産燃料)의 공급
 - 용재(用材)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업인 등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

□ 최근 6년간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금액은 연간 62만원~158만원 규모

[표 1]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규모: 2019~2024년 10월

(단위: 천원)

무상양여 유형	내용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. 10월
(법 제29조제1항제1호)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	산불피해 복구용 관 목(중간크기 나무), 호우로 인해 전도된 나무를 복구용으로 양여	—	—	—	—	3	49

- 2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7. “임산물(林産物)”이란 목재, 수목, 낙엽,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(産物), 그 밖의 조경수(造景樹), 분재수(盆栽樹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정의)

⑤ 법 제2조제7호에서 “그 밖의 조경수,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조경수·분재수
2. 가지·꽃·열매·생잎·장작·톱밥·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
3. 대나무류·초본류·덩굴류·이끼류
4. 산림버섯·패
5. 숯(톱밥숯을 포함한다)·수액(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)
6. 합판·단판·섬유판(fiberboard)·집성재·성형재·마루판·목재펠릿 등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

- 3) 법 제21조(국유림의 대부등)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.

5.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(이하 “국유임산물”이라 한다)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·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
무상양여 유형	내용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. 10월
(법 제29조제1항제2호) 재해를 입은 자에게 재 해복구에 필요한 건축 자재 또는 임산연료(林 産燃料)의 공급	—	—	—	—	—	—	—
(법 제29조제1항제3호) 용재(用材)가치가 없는 숯가꾸기 산물 농업인· 어업인 등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 급하려는 경우	지역주민에 동절기 멜감 지원	1,337	1,395	705	615	1,574	81
합계		1,337	1,395	705	615	1,577	130

주: 1.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실적은 m³ 또는 본/그루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, 아래 기준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였음

-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(산림청예규 제714호)
- 입목재적·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(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제905호)

2. 멜감으로 무상양여 되는 경우는 용재로서 가치가 없는 나뭇가지, 나뭇잎 등이므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소액임

자료: 산림청 제출자료

-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감소가 예상됨
 - (무상공급 요건)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,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
-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 또는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국유임산물의 종류 및 사용량, 해당 시점에서의 국유임산물 가격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수입감소 규모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